지식경제부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2012년 11월 2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김남영 산업피해조사팀장(5561), 이은정 주무관(4956)
방순자 덤핑조사팀장(5571), 박종희 사무관(4960)
이상준 불공정무역조사팀장(5581), 이범천 사무관(5582)

무역위, 3개 기업 FTA 무역조정지원 판정 및 중국산 합판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현정택)는 11.21(수), 제30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,

① 3개 기업에 대해 한-EU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,

② 중국산 합판(Plywood)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으며,

③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D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.

□ 한-EU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 판정 件

○ 무역위원회는 한-EU FTA 이행으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4개 기업중 3개 기업에 대해 한-EU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함

- A기업과 B기업은 핸드백과 지갑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EU산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'11년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

- C기업은 돈육가공업체로서 EU산 돈육의 수입증가로 인해 '12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함

○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됨

□ 중국산 합판(Plywood)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결정 件

○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합판에 대한 (사)한국합판보드협회의 반덤핑 조사신청('12.10.8)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('12.11.5) 하였음

- 동 제소건은 '11.2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(5.12~38.10%, 3년)한데 이어, 최근 시장점유율이 급등한('09년 16%→'11년 36%)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에 관한 것임

○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고 그 외 가구, 마루판 등으로도 사용되는 후판(厚板)제품으로,

- 국내시장규모는 '11년 기준으로 약 5,600억원 수준이며, 이중 국내생산품이 18%, 중국산 제품이 36%, 기타국 제품이 46%를 차지함

○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(2개월 연장가능)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(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)을 내리며,

- 이어 3개월(2개월 연장가능)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임

□ 원산지 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件

○ 무역위원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지갑 및 가방을 수입한 D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로 불공정무역행위 해당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함

○ D기업은 지난 '10.12월부터 '11.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산지가 미표시된 중국·튀니지산 지갑 및 가방 7백여점을 수입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

<붙임> 1.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1부.
2. 중국산 합판 반덤핑 조사개시 개요 1부
3. 반덤핑조사(원심) 절차도 1부.
4.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개요 1부.

붙임 1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, 컨설팅 등 지원

□ **(요건)** ①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*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, ②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·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, ③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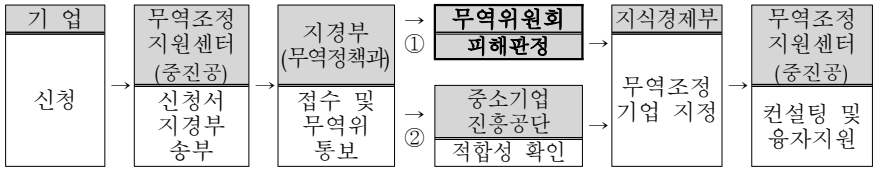
*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%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·고용·가동률·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

□ **(절차)** 기업이 지식경제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,

○ ①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지경부 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

* 무역위원회 심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

<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>



□ **(효과)**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, 컨설팅 자금의 80%를 지원하고,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
○ 컨설팅 자금 : 소요비용의 80% 지원

○ 융자 : 시설(30억원내, 거치포함 8년) · 운전자금(5억원내, 거치포함 5년)

* 기준금리는 '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−0.45%p'로 '12.4/4분기 기준 2.59%임

붙임 2 중국산 합판 반덤핑 조사개시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(사)한국합판보드협회

○ 조사대상업체 : 중국 상하이 이다(Shanghai YEE DA) 社 등

○ 조사대상물품

- 품명 : 합판(Plywood)
- 정의 :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방향이 직교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, 두께 6mm 이상인 후판(厚板) 제품
- 관세분류 : HSK 4412.31.4000, 4412.31.5000 등
- 용도 :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며 그 외에 가구, 마루판 등으로도 사용됨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성창기업(주), 선창산업(주), 이건산업(주), 신광산업(주), 동일산업(주) 5개사

○ 수입자 : 수입자는 미산우드(주), 동창종합건재(주) 등 다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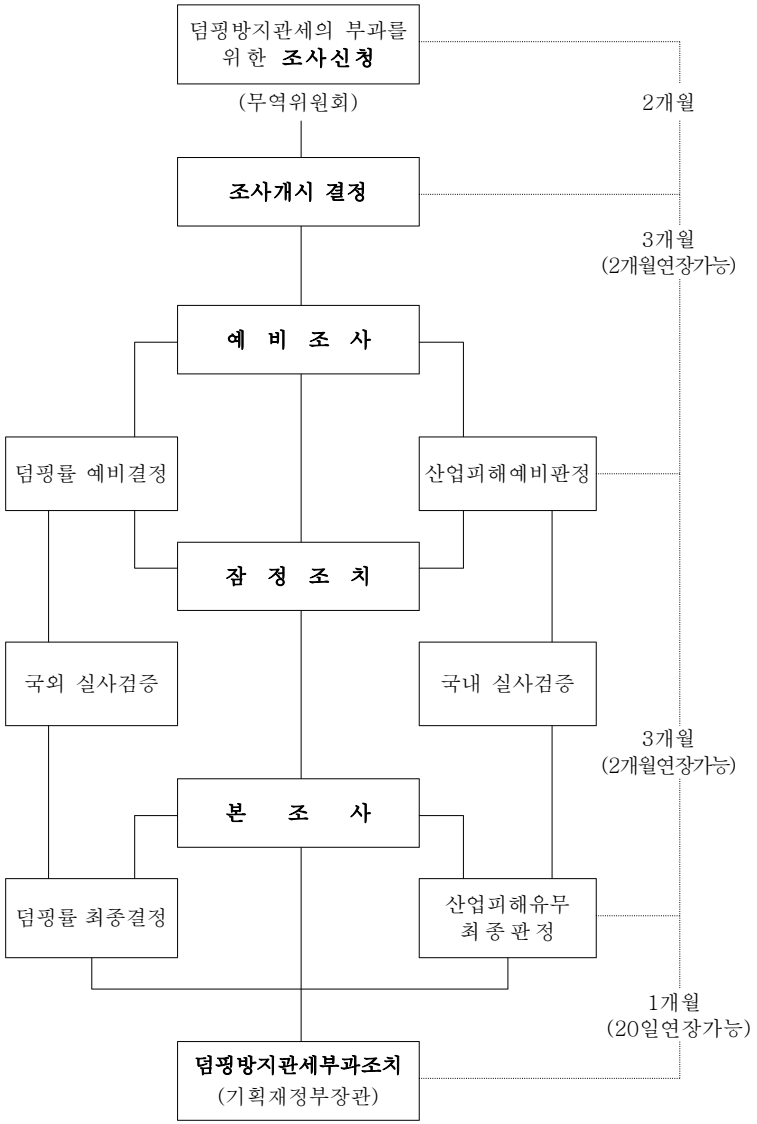
○ 수요자 : 주로 지역단위의 중소 건자재 유통상이며, 합판은 이들을 통해 소규모 건축업자(최종 수요자)에게 공급됨

○ 국내시장규모('11년) : 5,667억원 / 182만㎥

□ 반덤핑 조사 및 조치 일정

○ 조사개시 결정 → 예비판정(5개월 이내) → 공청회 → 최종판정(5개월 이내) → 반덤핑관세부과 여부 결정 등 조치(기획재정부)

붙임 3 반덤핑조사(원심) 절차도



붙임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지재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, 시정조치명령 등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

□ 조사 절차

조사 신청 (신청인→무역조사실)
- ·누구든지, 서면신청(조사신청서+증빙자료)
- ·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

직권조사
- ·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

조사개시 결정 (무역조사실/위원회보고)
- ·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, 보완
- ·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

잠정조치
- 회복불가능한 피해발생(우려)시

사건 조사 (무역조사실)
- ·서면조사 원칙, 현지조사 가능
- ·외부전문가 감정, 기술설명회 등
- ·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한 조사·판정

의견수렴
- ·판정 전 제재조치(안)에 대한 의견수렴

불공정무역행위 판정 (무역위원회)
- ·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(2월씩 2회 연장 가능)
- ·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
- ·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

제재조치 시행 (무역위원회→피신청인)
- ·시정조치 명령
- ·과징금 부과

이의신청 (피)신청인→무역위원회)
- ·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신청

이의신청 심의·결정 (무역위원회)
- ·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(30일 연장 가능)